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1월 27일

고흥군의회 의장  이 재 학 

고흥군의회 훈령 제2023-10호

## 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72조제2항”을 “제8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72조제2항”을 “제8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보존회의록”이라 함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2항 또는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 제54조 및 제69조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고흥군의회에 영구보존하는 고흥군의회회의록(이하 “회의록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84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